

#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6. 11. 16 (목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6. 11. 21(화)
- 다. 상정일자 : 2006. 12. 5(화) 제135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 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6.12. 5) 상정·가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자치행정과장 신영선)

- 가. 제안이유
  -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복식부기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하여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- 나. 주요골자
  - 직급별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(부칙 제2조제2항 개정)
    - 복식부기의 직급별 정원 6급 1명, 7급 1명,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6. 12. 31에서 2008. 12. 31까지 2년 연장.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함경호)

- 가. 본조례안은
  - 복식부기 운영을 위하여 2006. 12. 31일까지 승인된 6급 1명, 7급 1명, 8급 1명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
- 나.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 내 용
○ 복식부기 정원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는 ?	○ 현재 일반회계와 복식부기를 동시운영하고 있으나, 향후 회계는 복식부기로 운영되어야 하나 아직 정착되지 않았음 이에 분석한 결과 정착을 위하여는 2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.

#### 5. 심 사 결 과 : 수정의결

#### 6. 소수의견의 요지 :

- 우리 평창군이 지난 6월 2014 동계올림픽 후보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부칙에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단서규정인 "IOC의 1차 후보도시 결정에서 제외시 2006년 6월 23일까지로 한다"는 규정은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.

#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: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.

#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 정 안

제안년월일 : 2006년 12월 5일

제 안 자 : 조례심사특별위원회

## 1. 수정이유

- 가. 우리 평창군이 지난 6월 2014 동계올림픽 후보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부칙에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단서규정인 "IOC의 1차 후보도시 결정에서 제외시 2006년 6월 23일까지로 한다"는 규정은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
- 나. 이에 조문을 적법하게 수정하기 위함임

## 2. 수정주요골자

- 가. 안 부칙 제2조제2항의 "IOC의 1차 후보도시 결정에서 제외시 2006년 6월 23일까지"를 삭제

#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 정 안

제안년월일 : 2006년 12월 5일  
제 안 자 : 조례심사특별위원회

"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"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 제2조제2항의 "IOC의 1차 후보도시 결정에서 제외시 2006년 6월 23일까지"를 삭제



#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33
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11. 4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복식부기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하여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직급별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(부칙 제2조제2항 개정)
  - ▷ 복식부기의 직급별 정원 6급 1명, 7급 1명,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6. 12. 31에서 2008. 12. 31까지 2년 연장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가. 관련법령 : 별첨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- 다. 예산조치 : 해당없음.
- 라. 관계부서승인 : 강원도 총무과 - 21747(2006.10.20)
- 마. 입법예고 :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의거 생략

##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1789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제2항 중 “6급 1명, 7급 1명, 8급 1명(복식부기 3명)은 2006년 12월 31일까지”를 “6급 1명, 7급 1명, 8급 1명(복식부기 3명)은 2008년 12월 31일까지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# 관계 법령 발취

## 지방자치법

제103조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21조(정원의 규정)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~ 5. (생략)

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